내용증명

**발신인**

법인명 : **AAA주식회사**

대표이사: **나대표**

주소 : **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（판교동, 판교원마을3단지 아파트）1호**

전화번호 : **02-000-000**

**수신인**

이름 : **AAA씨**

주소 : **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릉동산길 13 （영평등） 1호**

전화번호 : **02-000-000**

**제목 : 용역대금 지급 청구**

|  |
| --- |
|  |

1. 귀하（수신인, 이하 ’귀하’: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발신인은 2023.11.01 경 귀하에게 신발제작（이하 ‘본 건 용역 이행 내용’）을 해주고，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2023.11.30 용역대금 1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（이하 '본 건 용역 계약’）을 체결하였습니다.

3. 이에 본 발신인은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에 따른 산출물을 2023.11.29 귀하에게 최종적으 로 인도하여 주었습니 다.

4. 그런데 귀하는 본 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5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급기한은 2023.11.30이었습니다.

5.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3.12.31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（예금주 : AAA주식회사, 은행명 : 좋은 은행, 계좌번호 : 101-000）.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

이 경우，귀하는 본 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,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 게 될 것입니다.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%가 될 것입니다.

6. 뿐만 아니라,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,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.

-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%이자를 납입하고 있다.

7.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위 발신인

AAA주식회사

나대표(인)